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(902)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남창진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
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
“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”를
추가하려는 것입니다.

휴대전화의 보급으로 공중전화의 수요 급감 및 공중전화 시설의
관리 소홀에 따라 관련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
있으나 시설 현대화 등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
시민들의 공중전화 이용 불편 및 가로경관 훼손 등을 초래하고
있습니다.

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
통화품질 및 최소한의 시설 수를 확보하고, 범죄예방을 위한
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가
등장하고 있는 바, 이의 설치 유도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

도모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높이고자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